

### 3) 연대회의 출판사업 준비과정 보고

#### 책의 목적

유엔인권관련 조약에 대해 일반에 소개된 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한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무대에서 활동을 벌였지만 국내에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을 벌인 몇 몇 만이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대한 해설과 민간단체의 활동 보고를 담은 책이 권리의 주인인 어린이·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의해 읽혀질 때 권리조약의 내용이 우리 사회속에서 이용되고 실현될 날이 가까울 것입니다.

#### 책의 내용

##### 서문

##### I 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 해설

- 1) 어린이 인권조약과 아동관의 변화-이기범(숙대 교육학과 교수, 연대회의 실무대표)
- 2) 조약의 역사적 배경-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연대회의 간사)
- 3) 각 조항마다의 간략한 해설-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4) 조약 및 세계정상활동계획의 국내이행성과에 대한 연구-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5) 조약과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상황-이용교(청소년개발원)
- 6) 조약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성격-조용환(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7) 기타-참여를 원하는 단체

## II부. 유엔과 어린이인권

- 1) 조약에 근거한 '보고절차'에 대한 해설
- 2) 정부최초보고서 전문
- 3) 민간보고서 전문
-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실무분과회의(11월)와 연례회기(96년 1월) 결과보고-정부·민간대표 발언문과 한국에 대한 권고문

## III부. 한국의 어린이인권단체; 어린이 인권관련 민간단체활동보고

- 1) 각 단체소개, 연대회의 소개
- 2) 최근활동자료모음: 어린이도서출판현황, 육아시설현황, 학교주변유해환경조사, 가출의식조사, 교육개혁과 학부모의 역할, 자유학교 개설 등.

\*부록: 어린이권리조약 전문

일정: 96년 5월 어린이달 출판(출판사: 내일을 여는책)

10월 기획안 확정

- 11월 원고청탁마감/단체소개자료 정리

- 1월 원고마감

- 2월 원고감수/머리글·추천사 청탁(공동대표)

- 3월 출판사 넘김

- 5월 발간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락처: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전화 : 715-9185, 팩스 : 715-9186

수 신 : 각 신문사 사회부, 아동담당 기자  
발 신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문의: 715-9185, 김수경)  
전송매수 : 4  
제 목 : 연대회의 대표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 참가에 관한  
보도요청

민주언론의 창달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7월 7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올 11월 22일(수)에 한국보고서를 검토하게 될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서 민간보고서는 주요 자료로 이용되며, 이에 한국의 민간대표가 참가초청을 받아 구두발언과 토론을 하게 되었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본심사는 내년 1월의 제 11차 정기회기에서 이뤄지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된다.

## <참조사항>

1. 회의명: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meeting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의 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기회기에 앞서 가지는 11차 실무분과회의가 올 11월 20-24일, 제네바에 자리잡은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다음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96년 1월)에 참석할 정부와 토론할 핵심사안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열린다. 민간단체의 참여와 자유로운 발언을 돕기위해 이 모임은 비공식이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미리 '보고서'를 낸 민간단체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민간대표의 발언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은 정부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또다른 정보가 있는 것인지,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모임에서 이루어질 토론과 채택될 질문과 권고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것이다. 실무분과가 제기한 질문과 권고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회기에서 답변해야 하며, 민간단체는 업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식초청을 받아 실무분과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표단 구성:** 이기범(李起範, 39)

- 숙명여대교육학과 교수/공동육아연구회 회장/연대회의 실무대표
- 노혜련(盧惠, 36)
- 송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류은숙(柳銀淑, 27)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연대회의 실무간사

### 활동계획

11월 18일 출국

20일 NGO Group for CROC 면담

2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위원 면담

유엔인권센타의 한국전문가인 Ms.Marta Santos Pais, Mr.Swithn  
Mombeshora 면담

22일 오전 10시-오후 1시 한국보고서 관련토론-민간대표 발언

23-24일 NGO Group for CROC 주관 민간단체 토론회

한국보고서 관련 대정부질문서/권고안 확정

ILO/WCC/유엔인권센타 등에서 활동하는 교포 면담

25일 귀국

12월 5일 오전 11시 대표단 활동보고와 기자회견(세실 레스토랑)

### 3. 관련조약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기존 번역어인 '아동권리협약'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연대회의에선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으로 부르고 있음. '협약' 보다는 '조약'이라 하는 것이 조약의 강제성과 권위를 높여주며, 조약에서 말하는 아동(child)은 18세 미만자를 가리키기에 '어린이·청소년'이라 한것임.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현재 170여개국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조약에 열거된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약을 비준한 정부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2년안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는 조약과 관련되어 이행된 세부적인 단계에 관한 보고이다. 우리 정부는 기한보다 6개월 이상 늦은 94년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4. 연대회의 구성

공동대표 : 이오덕(李五德 교육학자/우리말연구소 소장)  
이윤구(李潤求 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한국선명회 회장)  
주정일(朱貞一 아동학자)  
한승헌(韓勝憲 변호사)

실무대표 : 이기범(李起範 숙명여대 교육학과, 공동육아연구회)  
실무간사 : 류은숙(柳銀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김수경(金首卿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실)

참가단체:

<주 관>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공동육아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주주의법  
학연구회/부스리기독교회/어린이도서연구회/물꼬/인권운동사랑방/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자원활동단  
체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OMEP세계  
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인간교육실현전국학부모연대

<참 관>

또 하나의 문화(교육소모임)/여성단체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성폭  
력상담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5. 민간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사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위해 해당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장  
려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가 제출한 민간단체보고서는 유엔의 자유권조약(92년), 사회권 조약  
(95년)에 대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성과를 얻은 데 이어 한국 민간단체로는  
세번째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21개 단체와 10여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만든 민간보고서에는 아동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  
괄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 권리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현장활동가와 학계 연구자가 공  
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민간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체계와 분량(20쪽을 넘어서  
는 안됨)으로 만들어졌다.

<민간보고서 차례>

서론

제1장-조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제3장-일반원칙

제4장-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5장-가정환경과 대리보호

제6장-기초보건과 복지

제7장-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제8장-특별보호조치

부록-보육사 배치기준, 아동복지시설직원 근로시간, 아동복지시설직원 근속년수, 1988-90년  
아동복지시설직원 이직률,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학교당 학생수 비교, 사교육지 증가추세도표  
이 보고서에서 연대회의는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할 27 사항에 대  
해 지적하고 있다.

### <주요권고요청사항>

-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교육, 복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것
-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 이혼시 아동의 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시 사회복지기관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정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출 어린이 쉼터, 그들의 가정복귀를 위한 치유센터를 설치할 것
-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5% 확보,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
- 어린이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과 교육에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할 것
- 법원선외(先議)제를 신설하여 청소년이 불필요한 일반 형사범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기존의 소년원 등으로 차별화할 것
-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되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프로그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6. 그간의 연대회의 활동

- 3월 15일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 4-5월 보고서 한글본 집필  
한글원고 보완 완료 /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7회 중앙일보에 게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관한 만화홍보물 2만장 제작 배포
- 6월 보고서 영역
- 7월 7일 영문보고서 완성, 제네바로 발송
- 11월 22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 참석·발언
- 이후 일정-
-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의에 업저버로 참석
- 5월 조약해설논문 7개와 정부·민간보고서, 유엔의 권고안을 모은 책 출판(출판사: 내일을 여는 책)  
어린이 인권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락처: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전화 : 715-9185, 팩스 : 715-9186

수 신 : 각 단체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담당자 앞

발 신 : 연대회의 실무대표 이기범/ 간사 김수경(문의: 715-9185)

전송매수 : 15쪽

날짜: 96년 2월1일

제 목 : 1) 1월18, 19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 참가보고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한. 영)

##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 참가보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가 지난 18, 19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보고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의원 7명, 허승 주제네바 대사등 정부 대표단 10명, 옹저버로 연대회의를 대표해서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했습니다.

- 회의가 끝난 뒤 안국담당복 위원 Marta Santos Pais씨는 "한국 아동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한국정부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었다"고 논평했다고 류은숙씨가 전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에 장애요소가 되는 우려점, 개선점등을 주요내용으로 권고사항을 채택, 26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5년 뒤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의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했고, "정부보고서, 회의록, 권고문의 배포와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의 활동에 있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제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며, "유보조항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대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되는 문제'들로 한국정부가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 어린이·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과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등)에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제안과 권고사항으로

[ ] 편집자주

- 정부가 유보한 제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제21조 가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제40조 2항 나호(5)[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E '제안과 권고' 19번)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실현할 것과 학교 교육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21번)
- 국내법을 차별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 등을 포함한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개선을 노력할 것(22번)
-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조약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발전시킬 것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음부즈맨 또는 독립적인 청원기관, 감시기관을 설립할 것(23번)
-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한 협력의 증진을 꾀할 것(23번)
-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 정리할 것(24번)
-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참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26번)
-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할 것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27번)
-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에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28번)
- 어린이·청소년의 인격, 재능 및 능력의 최대한 계발 등 조약 29조에 보이는 교육목적 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29번)
- 어린이·청소년의 노동분야에 있어 ILO조약 138호[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의 기준을 고려할 것(30번)
-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31번)
- 정부보고서, 회의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의견이 국내에서 가능한 널리 배포할 것(32번)



## 보도자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수 신 : 각 신문사 사회부, 아동담당 기자  
발 신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문의: 715-9185, 김수경)  
전송매수 : 9쪽  
제 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보도요청

민주언론의 창달과 인권의 증진<sup>2</sup>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과보고 및 민간단체 입장

- 지난 1월 18, 19일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 26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에 장애요소가 되는 점등 개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최종의견(권고사항)을 채택했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권고문 내용에 "조약의 홍보와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 사회지표의 마련과 아동학대예방대책 마련을 지적인 것, 소년소녀 가장의 보호" 등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추상적으로 보다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5년 뒤인 2001년 추가정부보고서에서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후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제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며, "유보조항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대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되는 문제'들로 한국정부가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 어린이·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과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등)에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제안과 권고사항으로

[ ] 편집자주

· 정부가 유보한 제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제21조 가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제40조 2항 나호(5)[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E '제안과 권고' 19번)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실현할 것과 학교 교육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21번)

· 국내법을 차별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 등을 포함한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개선을 노력할 것(22번)

·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조약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발전시킬 것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맨 또는 독립적인 청원기관, 감시기관을 설립할 것(23번)

·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한 협력의 증진을 꾀할 것(23번)

·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 정리할 것(24번)

·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참가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26번)

·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할 것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27번)

·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에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28번)

· 어린이·청소년의 인격, 재능 및 능력의 최대한 계발 등 조약 29조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29번)

· 어린이·청소년의 노동분야에 있어 ILO조약 138호[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의 기준을 고려할 것(30번)

·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31번)

· 정부보고서, 회의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의견이 국내에서 가능한 널리 배포할 것(32번)

< 참조사항 >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기존 번역어인 '아동권리협약'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연대회의에선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으로 부르고 있음. '협약' 보다는 '조약' 이라 하는 것이 조약의 강제성과 권위를

높여주며, 조약에서 말하는 아동(child)은 18세 미만자를 가리키기에 '어린이·청소년'이라 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은 89년 11월20일 UN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현재 170여개국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20일부터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으며, 조약 44조 1항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약의 의무이행에 있어 각 조약 당사국의 진전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며, 임기는 4년, 재선이 가능하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명의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통상 매년 열리며 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장은 Alila Belembaogo(여, 부르키나 파소(국가명))씨이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 95년 2월9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준비모임을 갖고, 3월15일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연대회의) 결성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공동대표에는 이오덕(李五德 교육학자), 이윤구(李潤求 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 주정일(朱貞一 아동학자), 한승헌(韓勝憲 변호사) 등 4명이며, 실무대표는 이기범(李起範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간사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스리기선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7월7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지난해 11월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서 한국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는 주요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이 자리에 한국의 민간대표 이기범(李起範, 40, 숙명여대 교육학과), 노혜련(盧惠璉, 37,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류은숙(柳銀淑, 2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가초청을 받아 구두발언과 토론을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한국 민간단체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 실천지향적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난 1월18-19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본심사가 이뤄졌는데, 이 회의에는 민간단체 대표 류은숙씨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 연대회의는 지난 한해동안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업, 어린이의 날 중앙일보 기획시리즈 연재, 조약에 관한 만화홍보물 작성·배포, 제네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참가등 활동을 벌였다. 오는 5월에는 도서출판 <내일을 여는 책>에서 정부·민간보고서, 그간 연대회의 활동을 담은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 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1회기

(Eleventh session)

## 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 266-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C/C/8/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 A. 머리말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사전 질문서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준 정보를, 그리고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곧 이어 대한민국이 제출해준 추가 정보를 환영한다.

###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체제 속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4.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이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점을 기쁘게 주목한다.

6.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의 서면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환영하며, 한국이 조약당사국으로서 둔 유보들을 철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재차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한국 대표단의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 C.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인 현시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적절한 실현과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증대되는 빈곤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최근에는 군사통치기간을 벗어났으며, 이런 상태는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 D.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21조 (가)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40조 2항 (나)호의 (5) [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를 유보한 처사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는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과 반대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한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조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린이·청소년, 특히 가장 취약한 어린이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1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의 어린이·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가지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요원들 등을 의미한다.

11. 조약 4조[아래 조약 참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의 최대한에 이르기까지)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사회적 인격적으로 발전케 하기 위한 분야에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어린이·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원칙 (즉 조약 2조 [차별금지], 3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12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 아래 조약 참조]의 규정)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어린이·청소년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들(최소 결혼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사생아들을 괴롭히는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존재를 우려하면서 주목한다.

13.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에의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분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정부가 명분으로 삼아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해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입양관계 해소방식은 최상의 배려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 및 조약 21조[아래 조약 참조]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와의 관계에서 조약과 맞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있는 당국자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린이·청소년까지를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이런 여러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특히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나라 사이의 입양율이 높은 것이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어린이·청소년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도 결여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어린이·청소년 유기문제,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높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적 방법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회의 또다른 관심거리들이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 교육제도에서 조약 29조 [아래 조약참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베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재주와 능력을 잠재력의 한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협을 안고 있다.

17.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노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군, 정부의, 주최는, 비윤적, 제도의, 개혁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고용이 허용되는 연령의 최하한선 사이의 모순이 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사이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조약의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9조 [아래 조약 참조], 40조 [아래 조약 참조] 등과 양립되지 않는다.

##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9조 3항, 21조 (a)호, 40조 (b)호의 (v)[8번 참조]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 [아래 조약 참조]로 표현되는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옹호하도록 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어린이·청소년, 사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법관, 사법경찰관리,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 받은 관리 등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넣을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2조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최소 결혼 가능연령, 조약 23조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따르는 모든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특히 교육권), 사생아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린이·청소년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할 수 있는 연령의 최하한선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에 맞추기 위하여 끌어올리는 일,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국제적인 입양에 관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한 양립을 이루도록 관련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음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기관과 감시기관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들을 분류,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열악한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아래 조약 참조]의 완전히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증진 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데, 이런 자유권들은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규제에 의해서만 제한 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당사국의 지원조치], 27조 [아래 조약 참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 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어린이·청소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29조 [아래 조약 참조]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32조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고용허용 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 [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의 비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ILO와 협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추구해줄 것을 권장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교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 [아래 조약 참조]에 나타난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절차 (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사법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훈련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사법행정의 분야에서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 (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방지 및 형사정의분과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가 되도록 권고한다.

- 이상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 조약 내용 \*

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조 3항-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4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12조 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의 견해에 대하여는 어린이·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21조 가항- 또한 당사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입양이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적 및 후견인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7조 1항- 당사국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어린이·청소년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조 1항-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연령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40조 2항 나호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42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어린이·청소년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등록일	학부	
	Am	27
	-1	

## 보도자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수 신 : 각 신문사 사회부, 아동담당 기자  
 발 신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문의: 715-9185, 김수경)  
 전송매수 : 9쪽  
 제 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보도요청

민주언론의 창달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과보고 및 민간단체 입장

- 지난 1월 18, 19일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 26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에 장애요소가 되는 점등 개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최종의견(권고사항)을 채택했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권고문 내용에 "조약의 홍보와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 사회지표의 마련과 아동학대예방대책 마련을 지적한 것, 소년소녀 가장의 보호" 등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추상적으로 보다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5년 뒤인 2001년 추가정부보고서에서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후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제 속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하며, "유보조항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대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되는 문제'들로 한국정부가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 어린이·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과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등)에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제안과 권고사항으로

[ ] 편집자주

- 정부가 유보한 제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제21조 가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제40조 2항 나호(5)[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E '제안과 권고' 19번)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실현할 것과 학교 교육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21번)
- 국내법을 차별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 등을 포함한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개선을 노력할 것(22번)
-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조약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발전시킬 것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맨 또는 독립적인 청원기관, 감시기관을 설립할 것(23번)
-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한 협력의 증진을 꾀할 것(23번)
-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 정리할 것(24번)
-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참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26번)
-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할 것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27번)
-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에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28번)
- 어린이·청소년의 인격, 재능 및 능력의 최대한 계발 등 조약 29조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29번)
- 어린이·청소년의 노동분야에 있어 ILO조약 138호[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30번)
-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31번)
- 정부보고서, 회의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의견이 국내에서 가능한 널리 배포할 것(32번)

< 참조사항 >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기존 번역어인 '아동권리협약'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연대회의에선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으로 부르고 있음. '협약' 보다는 '조약' 이라 하는 것이 조약의 강제성과 권위를

높여주며, 조약에서 말하는 아동(child)은 18세 미만자를 가리키기에 '어린이·청소년'이라 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은 89년 11월20일 UN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현재 170여개국이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20일부터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으며, 조약 44조 1항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약의 의무이행에 있어 각 조약 당사국의 진전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며, 임기는 4년, 재선이 가능하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명의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통상 매년 열리며 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장은 Alila Belembaogo(여, 부르키나 파소(국가명))씨이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 95년 2월9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준비모임을 갖고, 3월15일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연대회의) 결성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공동대표에는 이오덕(李五德 교육학자), 이윤구(李潤求 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 주정일(朱貞一 아동학자), 한승헌(韓勝憲 변호사) 등 4명이며, 실무대표는 이기범(李起範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간사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맡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스러기선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7월7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지난해 11월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서 한국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는 주요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이 자리에 한국의 민간대표 이기범(李起範, 40, 숙명여대 교육학과), 노혜련(盧惠璉, 37,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류은숙(柳銀淑, 2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가초청을 받아 구두발언과 토론을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한국 민간단체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 실천지향적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난 1월18-19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본심사가 이뤄졌는데, 이 회의에는 민간단체 대표 류은숙씨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 연대회의는 지난 한해동안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업, 어린이의 날 중앙일보 기획시리즈 연재, 조약에 관한 만화홍보물 작성·배포, 제네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참가등 활동을 벌였다. 오는 5월에는 도서출판 <내일을 여는 책>에서 정부·민간보고서, 그간 연대회의 활동을 담은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 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1회기

(Eleventh session)

## 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 266-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RC/C/8/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 A. 머리말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사전 질문서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준 정보를, 그리고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끝 이어 대한민국이 제출해준 추가 정보를 환영한다.

###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한국의 국내법체제 속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4.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이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점을 기쁘게 주목한다.

6.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의 서면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환영하며, 한국이 조약당사국으로서 ~~유보들을 철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재차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한국 대표단의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연락~~ <sup>접촉</sup>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점

반공이 클 때 가장 큰

수준이

### C.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인 현시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적절한 실현과 부합되지 않았 ~~한 것~~ <sup>있어</sup> ~~아~~ <sup>있</sup>었다. 이것은 특히 증대되는 반공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최근에야 군사통치기간을 벗어났으며, 이런 상태는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 D.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21조 (가)항[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40조 2항 (나)호의 (5) [형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를 유보한 처사는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는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과 반대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한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조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어린이·청소년, 특히 가장 취약한 어린이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1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의 어린이·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가지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사법경찰관, 심리학자, 보건의료 요원들 등을 의미한다.

11. 조약 4조[아래 조약 참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의 최대한에 이르기까지)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사회적 인격적으로 발전케 하기 위한 분야에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어린이·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가 결여되고 있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원칙 (즉 조약 2조 [차별금지], 3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12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 아래 조약 참조]의 규정)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어린이·청소년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온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들(최소 결혼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사생아들을 괴롭히는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존재를 우려하면서 주목한다.

13.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에의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조처를 포함한, 여러 조처가 분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정부가 명분으로 삼아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해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입양관계 해소방식은 최상의 배려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 및 조약 21조[아래 조약 참조]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와의 관계에서 조약과 맞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있는 당국자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린이·청소년까지를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이런 여러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특히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나라 사이의 입양율이 높은 것이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어린이·청소년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도 결여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어린이·청소년 유기문제,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높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적 방법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회의 또다른 관심거리들이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 교육제도에서 조약 29조 [아래 조약참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베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재주와 능력을 잠재력의 한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

17.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노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조처는 빈곤절, 제도의 개혁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고용이 허용되는 연령의 최하한선 사이의 모순이 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사이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사법제도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조약의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9조 [아래 조약 참조], 40조 [아래 조약 참조] 등과 양립되지 않는다.

## E.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9조 3항, 21조 (a)호, 40조 (b)호의 (v)[8번 참조]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 [아래 조약 참조]로 표현되는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옹호하도록 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어린이·청소년, 사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법관, 사법경찰관리,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 받은 관리 등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넣을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2조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최소 결혼 가능연령, 조약 23조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따르는 모든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특히 교육권), 사생아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린이·청소년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할 수 있는 연령의 최하한선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에 맞추기 위하여 끌어올리는 일.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국제적인 입양에 관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한 양립을 이루도록 관련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기관과 감시기관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들을 분류,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열악한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아래 조약 참조]의 완전히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어린이·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증진 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데, 이런 자유권들은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규제에 의해서만 제한 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당사국의 지원조치], 27조 [아래 조약 참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더 발전된 방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 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방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가정폭력이나 어린이·청소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29조 [아래 조약 참조]에 보이는 교육목적을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32조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방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고용허용 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 [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의 비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ILO와 협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추구해줄 것을 권장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 [아래 조약 참조]에 나타난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절차 (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사법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훈련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사법행정의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 (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방지과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가 되도록 권고한다.

- 이상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 조약 내용 \*

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조 3항-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4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12조 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청소년의 견해에 대하여는 어린이·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21조 가항- 또한 당사국은 어린이·청소년의 입양이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적 및 후견인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7조 1항- 당사국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어린이·청소년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필요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조 1항-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연령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40조 2항 나호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42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어린이·청소년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민간단체연합~~

765721212 ①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3/F., Choyang Bldg., Galwol-dong, Yongsan-gu,
140-150, Seoul, KOREA
Tel: (822)-715-9185 / Fax: (822)-715-9186

To: ~~Annemieke Wolthuis~~
fax: (41-22)-740-1145

From: Yu Eun-Suk,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c/o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Date: November 6, 1995.

Dear

지난 1월 25일 CRC에서 보내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에서는 이를 받아 연대회의 소속 21개 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언론에 권고내용을 보도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주간지 시사저널에 민간단체 대표 류은숙씨가 본회의 참가 및 회의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5회 발행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취재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18일 한국정부는 정부보고서 사전심의결과 유엔아동권위원회가 “조약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조치와 그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95년 8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답변했다. 한국정부는 “적십자사,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의 민간단체들과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했다”면서 이 위원회가 △조약의 교육 △정부에 조약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조약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조정역할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유엔아동권위원회가 최종권고안에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하루소식>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저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 유니세프)가 약 10여명의

정부, 민간 단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빙, 식사를 한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동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동권리에 대해 정부보다 민간이 나서서 이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옳다는 취지로 전문가들을 모았다"면서 "위원장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없지만,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해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유니세프에서 만든 한 차례의 모임을 국가위원회의 설립으로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며, 아울러 이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